

# 소비자 인식을 바탕으로 한 원산지표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임건우\* · 양성범\*\*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Country-of-Origin Labeling Based on Consumer's Perception

Lim, Geon-Woo · Yang, Sung-Bu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some problems of the country-of-origin labeling based on the perception of consumers. For this, we surveyed 636 people. The questions of the survey are large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1) criteria and subject for imposition of fine, 2) the possibility of getting consumers confused with the products using domestic regional names as domestic products, 3) criteria for the country-of-origin transplant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restry products. According to the results, more than 30.0% of consumers preferred that it is adequate for imposing fine as much as its total sales, regardless of the type of business. In addition, in the case of products using domestic regional names, consumers can be confused about the products with domestic ones, even though there is a standard for confusing country-of-origin labeling. Standard for changing the country-of-origin of agricultural, forestry products and livestock, fisheries products are not balanc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s data for revising the country-of-origin labeling.

Key words : *confusing the country-of-origin labeling, customer, changing the country-of-origin, standard of fine*

## I. 서 론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

\*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석사과정

\*\* Corresponding author,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부교수([passion@dankook.ac.kr](mailto:passion@dankook.ac.kr))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표시란 원산지를 보기 쉽고 견고하게 물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원산지표시 제도란 거래 과정에서 물품의 원산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과 확인 또는 판정할 수 있도록 실정법으로 규범화하는 것을 의미한다(Shin, 2010).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 유도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의 원산지표시제도는 1991년 7월부터 수·출입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1993년 6월 국내 유통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2008년 6월 음식점의 주요 품목 원산지표시가 제도화되었으며, 2010년부터 원산지표시법이 개정되어 2019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원산지표시법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관세법, 식품위생법 등 다양한 법령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사례나 처분과 같은 무역과 관련된 원산지표시제도의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며(Chung, 2010; Lee, 2007), 원산지표시제도 단속 평가 및 피해 실태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Chung et al., 2011; Hwang, 2018). 그러나 본 연구는 원산지표시법 내의 존재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거나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는데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표시법 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설문하여 향후 원산지표시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원산지표시법의 문제점

원산지표시법은 크게 원산지표시, 표시 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로 구분된다. 원산지표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그리고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농·수산물 가공품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원료의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이다.<sup>1)</sup> 원산지표시 대상 중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와 같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등 20개의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한다.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징금의 부과 대상은 원산지표시 위반 등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sup>2)</sup>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1)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98% 이상인 경우는 그 해당 원료만을, 두 가지 원료의 합이 98% 이상인 경우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를 표시한다.

2)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표시를 손상·변경해서는 안 된다.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게 부과되며, 과태료는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에 대해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의 문제점은 목적과 형평성과 관련이 있다. 원산지표시법의 목적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가 다분하며, 상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발생했음에도 유통과정 내 빠져있는 관계자가 존재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두 번째로 형평성에 따른 문제는 원산지 위반 시 발생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농·축·수산물의 이식·이동에 따라 원산지가 변경될 경우 이식·이동의 기준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과징금 및 과태료의 문제, 거짓 표시 등의 문제, 이식·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표시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

## 1. 과징금 및 과태료 제도

### 1) 과징금 부과기준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의 문제점 중 하나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이를 조리하여 제공·판매 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 환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현재 행정상 의무 불이행의 위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은 위반품의 총 판매 금액인데 반해 음식점과 같이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원료 비율의 환산 금액을 비율로 정하기 때문에 위반 정도를 고려한다면 부과금액의 차이가 크다.

두 번째로 특정 부문에 있어 과징금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표시 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이 일반 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반찬의 가짓수나 원료 함량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과징금을 산출하기 어렵다.

### 2) 과태료 부과 대상

원산지표시 위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표시 방법 위반, 그 외에도 판매중개인이나 임차인 등의 운영자 또한 허위 표시, 조리·판매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

---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거짓 표시, 가공품 원산지표시의 손상·변경 등의 행위, 원산지표시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자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 및 판매중개인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표시 위반의 여부가 아닌 인지의 여부로 의무위반을 제재하지 않는 것은 임대업 혹은 판매 중개업의 브랜드 신뢰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

Table 1.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and fisheries transactions in 2018

	2017 (A)	2018 (B)	B/A (%)
On-line shopping mall	828,056	957,276	115.60
Mobile shopping mall	1,488,038	1,914,381	128.65
Total	2,316,092	2,871,656	123.99

Source: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Table 2. Violation of the country-of-origin labeling

		2017 (A)	2018 (B)	B/A (%)
Restaurant	False indications	1,585	1,633	103.03
	Not marked indications	606	652	107.59
	Total	2,191	2,285	104.29
Manufacturer	False indications	202	197	97.52
	Not marked indications	155	152	98.06
	Total	357	409	114.57
Meat sales	False indications	310	244	78.71
	Not marked indications	178	152	85.39
	Total	488	396	81.15
Street vendor	False indications	20	37	185.00
	Not marked indications	92	62	67.39
	Total	112	99	88.39
Mail-order business	False indications	22	59	268.18
	Not marked indications	-	29	-
	Total	-	88	-

Note: Mail-order business's violations of the country-of-origin labeling in 2017 are classified as other and cannot be identified.

Sourc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able 1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통신판매업 거래액은 전년 대비 23.9%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통신판매업 거래액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또한 증가하였으며 Table 2의 2018년 통신판매업체 원산지 거짓 표시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168.2% 증가하였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통신판매업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통신판매를 통해 농·축·수산물 구매가 증가하는 것에 반해 소비자의 식품 소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유통 경로가 될 수 있다.

## 2. 거짓 표시 등의 금지

원산지표시법 제6조 1항에서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란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팻말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가공식품의 상품명에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품들이 존재한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중국산을 섞지 않은 순수 용대리 자연건조 황태채’, ‘콩 100%로 국내에서 직접 만든 콩

Table 3. A case of the country-of-origin indication that may confuse

		The country-of-origin labeling of main raw material								
<p><b>중국산을 섞지않은 순수 용대리 자연건조 황태채 500g</b> 원산지: 상세설명참조</p> <table border="1"> <tr> <td>1. 제품 / 중량 / 식품유형</td> <td>상세메이저 제공</td> </tr> <tr> <td>2. 원산지 / 건조지</td> <td>러시아(국내가공) / 강원도인제군 북면 용대리275번지 최용식황태덕장 건조</td> </tr> <tr> <td>3. 제조 / 소분: 판매</td> <td>해송물산 / 최용식황태덕장</td> </tr> <tr> <td>4. 원료 및 함량</td> <td>황태100%</td> </tr> </table>		1. 제품 / 중량 / 식품유형	상세메이저 제공	2. 원산지 / 건조지	러시아(국내가공) / 강원도인제군 북면 용대리275번지 최용식황태덕장 건조	3. 제조 / 소분: 판매	해송물산 / 최용식황태덕장	4. 원료 및 함량	황태100%	<p>Goods: Pure Yondaeri Natural dry Hwang Tae-chae without mixing Chinese</p> <p>Origin of raw material: Dried Pollack (Russia)</p>
1. 제품 / 중량 / 식품유형	상세메이저 제공									
2. 원산지 / 건조지	러시아(국내가공) / 강원도인제군 북면 용대리275번지 최용식황태덕장 건조									
3. 제조 / 소분: 판매	해송물산 / 최용식황태덕장									
4. 원료 및 함량	황태100%									
<p>해찬들 우리쌀로 만든 태양초골드고추장 3g</p> <p>※ 생산 및 유통 시점에 따라 원산지 변경 전 제품이 혼용되어 발송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p> <p>물엿,고추양념(중국산/고춧가루 9.3%, 정제소금,양파,마늘),쌀 20.99%(국산),정제수,천일염(국산),고춧가루 2.0%(고추:국산),주정,대두,정제소금,대두분,찹쌀,국산쌀가루,중국</p>		<p>Goods: Taeyangcho gold red pepper paste made of Korean rice</p> <p>Origin of raw material: Red pepper paste (China), Rice (Korea), Solar salt (Korea), Red pepper powder (red pepper: Korea)</p>								
<p><b>콩100% 국내에서 직접 만든 콩기름</b></p> <table border="1"> <tr> <td>본상품구성</td> <td>콩기름 0.5L</td> </tr> <tr> <td>원재료 및 함량</td> <td>※생산 및 유통 시점에 따라 원산지 변경 전 제품이 혼용되어 발송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콩 100%[외국산(미국, 브라질, 파라과이 등), 대두 함유 이 제품은 알레르기, 호두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td> </tr> </table>		본상품구성	콩기름 0.5L	원재료 및 함량	※생산 및 유통 시점에 따라 원산지 변경 전 제품이 혼용되어 발송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콩 100%[외국산(미국, 브라질, 파라과이 등), 대두 함유 이 제품은 알레르기, 호두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p>Goods: 100% soybeans, Soybean oil made directly in korea</p> <p>Origin of raw material: Soybean (USA, Brazil, Paraguay)</p>				
본상품구성	콩기름 0.5L									
원재료 및 함량	※생산 및 유통 시점에 따라 원산지 변경 전 제품이 혼용되어 발송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콩 100%[외국산(미국, 브라질, 파라과이 등), 대두 함유 이 제품은 알레르기, 호두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기름' 등 상품명에 국산 또는 특정 지역 원료 원산지를 강조하거나 국내 가공지를 표시하여 상품을 판매되어 소비자가 상품의 주원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할 여지를 제공한다.

### 3. 이동·이식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요령 별표 5 이동·이식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요령에서는 축·수산물 은 국내로 수입되어 일정 사육 기간 비육하면 원산지를 국내로 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농·임산물은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작물체를 생산할 경우만 국내산으로 원산지 변경이 가능하다.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순이나 꽃을 생산하거나 비대 성장시킨 경우는 원산지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축·수산물과 농·임산물의 원산지 이동·이식 기준이 형평성이 맞지 않음을 의미한다.

### 4. 원산지표시 개선 방향

위에서 제시한 원산지표시법의 문제점은 크게 과징금 및 과태료, 혼동을 주는 원산지표시, 농·임산물의 이동·이식에 관한 문제로 구분된다.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산출 시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는 입차인 및 판매중개인 등이 상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인지 여부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는 브랜드 신뢰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혼동을 주는 원산지표시는 지역명 등을 활용하여 상품명에 표시하는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으

Table 4. Problems of the country-of-origin labeling method

	Problems
F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nes not balanced between Processors and Restaurants</li> <li>• Difficult to calculate a Restaurant's fine</li> <li>• Lack of imposition of penalty for rental and sales intermediaries when not marked by the country-of-origin</li> <li>• Male-order business is not included in the penalty for violation of the country-of-origin mark</li> </ul>
A confusing origin labe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sumer confused the country-of-origin of the product's main raw material due to the use of national or regional names in the product's name</li> </ul>
The transfer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s from the country-of-orig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iteria for transplantation and movement of farm products are not clear</li> <li>• Standard for transfer of the country-of-origin of livestock and marine products and farm products is inconsistent with equity</li> </ul>

며 이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정 기간 국내에서 비육하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변경되는 축·수산물과 달리 농·임산물의 경우 원산지가 변경되지 못한다. 이는 법령 내의 원산지 이동·이식 기준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조사 방법

원산지표시 현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 남녀 636명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주요 문항으로는 농식품 구매 시 표시사항 확인 빈도, 가공업자와 판매자, 음식점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적절성,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절성, 원산지 혼동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농·축·임산물의 원산지 이식·이동 등이다. 먼저 농식품 구매 시 표시사항 확인 빈도를 설문하여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할 때 자주 확인하는 표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그 중 원산지표시를 응답자들이 확인하는 빈도에 대해 파악한다.

두 번째로, 가공업자와 판매자, 음식점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적절성에서는 가공업자, 판매자, 음식점 등에서 농식품의 원산지 위반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아직 임대업 및 판매 중개업의 명확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기 때문에 설문을 통해 대상들의 적절한 과태료 기준을 물어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상품명에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가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상품명을 통해 혼동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임산물의 원산지 이식·이동에 관해 설문하여 농·임산물의 원산지 이식·이동과 축·수산물의 원산지 이식·이동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 2. 응답자 특성

먼저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에 대한 기초 통계량은 Table 5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323명, 남성 313명이며, 연령대는 20대 127명(20.0%), 30대 137명(21.5%), 40대 160명(25.2%), 50대 이상 212명(33.3%)이다. 가구원 수는 1인 가구 56명(8.8%), 2인 가구 107명(16.8%), 3인 가구 205명(32.2%), 4인 가구 215명(33.8%), 5인 이상 가구 53명(8.3%)이다.

Table 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requency (%)			Frequency (%)
Gender		Type of household			
Male	313(49.2)	Single-member household	56(8.8)		
Female	323(50.8)	Two-member household	107(16.8)		
Total	636(100.0)	Three-member household	205(32.2)		
Age		Four-member household	215(33.8)		
20 ~ 29	127(20.0)	Five or more member household	53(8.3)		
30 ~ 39	137(21.5)				
40 ~ 49	160(25.2)	Total	636(100.0)		
50 ≤	212(33.3)	Double-income status			
Total	636(100.0)	Yes	195(30.7)		
Marriage type		No	210(33.0)		
Married	405(63.7)	No answer	231(36.3)		
Single	223(35.1)	Total	636(100.0)		
Others	8(1.3)	Residential district			
Total	636(100.0)	Seoul	119(18.7)		
Average monthly income (thousand won)		Busan	43(6.8)		
≤ 1,000	18(2.8)	Daegu	31(4.9)		
1,000 ~ 1,999	38(6.0)	Incheon	32(5.0)		
2,000 ~ 2,999	84(13.2)	Gwangju	17(2.7)		
3,000 ~ 3,999	107(16.8)	Daejeon	22(3.5)		
4,000 ~ 4,999	109(17.1)	Ulsan	18(2.8)		
5,000 ~ 5,999	97(15.3)	Gyeonggi	151(23.7)		
6,000 ~ 6,999	60(9.4)	Gangwon	24(3.8)		
7,000 ~ 7,999	42(6.6)	Chungbuk	23(3.6)		
8,000 ~ 8,999	31(4.9)	Chungnam	24(3.8)		
9,000 ~ 9,999	25(3.9)	Jeonbuk	21(3.3)		
10,000 ≤	25(3.9)	Jeonnam	25(3.9)		
Total		Gyeongbuk	29(4.6)		
		Gyeongnam	42(6.6)		
		Jeju	14(2.2)		
		Sejong	1(0.2)		
		Total	636(100.0)		



## IV. 연구결과

### 1. 농식품 표시 확인 빈도

먼저 농산물 및 농식품 구매 시 표시사항 확인 빈도를 분석하기 위해 상품명, 식품의 유형 등 18가지 요인<sup>3)</sup>을 설문하였다. 설문 결과, 응답자들이 상품 구매 시 가장 자주 확인하는 표시사항은 유통기한으로 5번 구매 시 4번 이상 확인하고 있다. 유통기한 다음으로 제조연월일(3.79회), 상품명(3.65회), 내용량(3.21회) 순으로 표시 확인 빈도가 높았으며, 원산지명은 표시사항 중 5번째로 5번 구매 시 3번 이상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 Checking frequency on food labeling

	Mean	S.D	F-value
Sell-by-date	4.11 <sup>a</sup>	1.28	204.218*** (0.000)
Manufacturing year/month	3.79 <sup>b</sup>	1.40	
Product's name	3.65 <sup>b</sup>	1.52	
Content amount	3.21 <sup>c</sup>	1.39	
Country-of-origin	3.10 <sup>d</sup>	1.51	
Type of food	3.05 <sup>d</sup>	1.55	
Storage method	2.76 <sup>e</sup>	1.53	
Raw material	2.73 <sup>e</sup>	1.49	
Component or content	2.45 <sup>f</sup>	1.46	

\*\*\* F-valu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

Note 1: a, b, c, d, e, f are Tamhane post-hoc comparison result.

Note 2: F-test is to test whether the model is statistically appropriate.

원산지명을 포함한 요인의 평균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원산지명을 기준으로 상위 4개, 하위 4개를 선정하여 ANOVA 분석하였으며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이분산성으로 사후검증 방법은 Tamhane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원산지명과 상위 요인인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제조연월일, 상품명, 내용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하위 요인인 식품의 유형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3) 18가지 요인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제조연월일’, ‘상품명’, ‘내용량’, ‘원산지명’, ‘식품 유형’, ‘보관 방법’,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섭취 시 주의사항’, ‘업소명 및 소재지’, ‘열량’, ‘영양 성분(탄수화물, 단백질 등)’, ‘용기 및 포장 재질’,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부정 불량 식품 신고 표시’,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이며 설문은 복수 응답하였다.

제조연월일, 상품명, 내용량보다는 상대적으로 확인 빈도가 낮으나 18가지 요인 중 5번째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2. 과징금 및 과태료 제도개선

### 1)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총 판매액에 위반한 농수산물 배합 비율을 곱한 금액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46.9%이며 총 판매액에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53.1%로 총 판매액을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음식점에서 원산지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기준이 위반원료 비율의 환산 금액을 비율로 하는 것에 반대되는 결과이다. 통계적으로는 각 빈도를 동일한 비율로 볼 수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인 총 판매액을 소비자들이 더 적절하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가공품이 원산지표시 위반을 한 상품이고 이를 판매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적절한 과징금

Table 7. Imposing penalty surcharge on manufacturers

	Frequency (%)	$\chi^2$ -value
Total sales	338(53.1)	2.516 (0.113)
Amount multiplied by the ratio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s in violation of total sales	298(46.9)	
Total	636(100.0)	

Note:  $\chi^2$  test is to te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and expected frequencies of the sample values.

Table 8. Imposing penalty surcharge on vendors, in case of not awaring a violation

	Frequency (%)	$\chi^2$ -value
Total sales	245(38.5)	8.557** (0.014)
Amount multiplied by the ratio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s in violation of total sales	205(32.2)	
Exemption from penalty	186(29.2)	
Total	636(100.0)	

\*\*  $\chi^2$ -valu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5%.

Note:  $\chi^2$  test is to te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and expected frequencies of the sample values.

부과기준에 대해서 응답자들에게 설문한 결과 70.7%의 응답자가 판매업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그중 32.2%의 응답자가 총 판매액에 위반한 농수산물 배합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8.5%의 응답자가 총 판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또한, 제조업자의 과징금 부과기준과 마찬가지로 총 판매액을 부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음식점과 같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의 과징금은 음식의 총 판매액에서 원산지 위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배합 비율을 곱한 가격을 계산해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점의 부과되는 적절한 과징금의 기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총 판매액에 위반한 농수산물 배합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48.3%이며, 총 판매액을 적절하다고 한 응답자가 51.7%였다. 통계적으로는 총 판매액과 총 판매액에 위반한 농수산물 배합 비율을 곱한 금액 중 적절한 부과기준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응답자는 현재 음식점 과징금 부과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9. Imposing penalty surcharge on restaurants

	Frequency (%)	$\chi^2$ -value
Total sales	329(51.7)	0.761 (0.383)
Amount multiplied by the ratio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s in violation of total sales	307(48.3)	
Total	636(100.0)	

Note:  $\chi^2$  test is to te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and expected frequencies of the sample values

## 2) 과태료 부과 대상

원산지표시법에서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등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업이나 판매 중개업 등에서 원산지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상품의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임대업 및 판매 중개업에서 발생하는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설문했다. 임대업 및 판매 중개업의 구분은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로 하였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 시 개별 상품판매자보다 임대업 및 판매 중개업의 브랜드 신뢰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설문 결과,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모두 1,000만 원으로 가공업자의 과태료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0% 이상이며, 그 다음으로 500만 원에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다. 대형마트의 평균 과태료 기준은 747만 원, 홈쇼핑의 평균 과태료 기준은 777만 원, 인터넷 쇼핑몰의 평

균 과태료 기준은 769만 원이다. 따라서, 임대업 및 판매중개업과 같이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통업체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위반에 대한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10. Imposing penalty violation of the country-of-origin labeling in case of penalty is 10 million won in manufacturer

	Frequency (%)		
	Market	Home shopping	Internet shopping
No Punishment Needed	25(3.9)	16(2.5)	17(2.7)
1 million	30(4.7)	19(3.0)	25(3.9)
2 million	26(4.1)	31(4.9)	26(4.1)
3 million	35(5.5)	24(3.8)	29(4.6)
4 million	8(1.3)	15(2.4)	15(2.4)
5 million	104(16.4)	103(16.2)	96(15.1)
6 million	7(1.1)	7(1.1)	13(2.0)
7 million	10(1.6)	7(1.1)	13(2.0)
8 million	2(0.3)	8(1.3)	4(0.6)
9 million	1(0.2)	1(0.2)	1(0.2)
10 million	388(61.0)	405(63.7)	401(63.1)
Total	636(100.0)	636(100.0)	636(100.0)
Average fine (10 thousand won)	747.8(340.51)	777.0(318.96)	769.8(324.48)

Note: ( ) of average fine is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average fine

### 3. 거짓 표시 등의 금지 개선

소비자가 원산지명보다 더 자주 확인하는 식품표시사항으로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 기한, 제조연월일, 상품명, 내용량이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명을 활용한 원산지 표시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명을 제공하고 이들의 주원료의 원산지를 실제로 소비자가 혼동하고 있는지 설문하였다. 분석 결과, 상품명 ‘중국산을 섞지 않은 순수 용대리 자연건조 황태채’의 주원료인 명태(원산지: 러시아산)에 대해서 국산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30.2%이며, ‘강원도 고성 씩을수록 고소한 먹태’의 주원료인 명태(원산지: 러시아산)에 대해서는 58.2%의 응답자가 국산으로 응답하였다. ‘콩 100%로

Table 11. Consumer awareness of product names that may confuse the country-of-origin

Product's name	Country-of-origin of main raw materials	Frequency (%)	
Pure Yondaeri Natural dry Hwang Tae-chae without mixing Chinese (Raw material: Pollack)	Korea	192(30.2)	
	Foreign	Russia	87(13.7)
		China	17(2.7)
	Unkown	340(53.5)	
	Total	636(100.0)	
Goseong in Gangwon Province, the more savory pollack you chew (Raw material: Pollack)	Korea	370(58.2)	
	Foreign	Russia	49(7.7)
		China	21(3.3)
	Unkown	196(30.8)	
	Total	636(100.0)	
100% soybeans, Soybean oil made directly in Korea (Raw material: Soybean)	Korea	204(32.1)	
	Foreign	China	44(6.9)
		USA	10(1.6)
	Unkown	378(59.4)	
	Total	636(100.0)	
Sunchang red pepper paste (Raw material: Red pepper powder)	Korea	315(49.5)	
	Foreign	China	36(5.7)
		Vietnam	6(0.9)
	Unkown	279(43.9)	
	Total	636(100.0)	
Taeyangcho gold red pepper paste made of Korean rice (Raw material: Red pepper powder)	Korea	383(60.2)	
	Foreign	China	25(3.9)
		Vietnam	4(0.6)
	Unkown	224(35.2)	
	Total	636(100.0)	

국내에서 직접 만든 콩기름’에서 주원료 콩(원산지: 미국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32.1%이며, ‘순창 고추장’과 ‘우리 쌀로 만든 태양초 고추장’의 주원료인 고춧가루(원산지: 중국산)의 원산지는 각각 49.5%와 60.2%로 50% 이상의 응답자가 국산으로 혼동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상품들의 상품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 4. 이동·이식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개선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별표5 이동·이식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요령에 따르면 축·수산물은 출생국이 국내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국내에서 비육할 경우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변경된다. 그러나 농산물은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가 생산된 경우 그 작물체만 원산지가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순 또는 꽃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축산물이 일정 비육 기간 경과 후 원산지가 변경되는 것과 형평성이 어긋난다. 농·임산물과 축산물의 원산지 변경에 대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원산지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농·임산물 중 국내에서 중국산 누에나 번데기에 동충하초균을 접종하여 ‘동충하초’를 생산하는 경우, 두릅 대목에서 두릅순을 생산하는 경우, 인삼, 도라지와 같은 다년생 작물을 국내에서 이식하여 생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문하였다. 설문 결과 동충하초는 64.5%, 두릅은 64.6%의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다년생 작물 또한 이식생산과 장기 재배 모두 약 59.0%의 응답자가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원산지가 변경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국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원산지를 국산으로 보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Table 12. Consumer consent on the transfer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s from the country-of-origin

	Frequency (%)			
	Dongchung-hacho	Edible shoots of a fatsia	Ginseng transplantation production	Long-term ginseng cultivation
Agree	226(35.5)	225(35.4)	256(40.3)	261(41.0)
Not agree	410(64.5)	411(64.6)	380(59.7)	375(59.0)
Total	636(100.0)	636(100.0)	636(100.0)	636(100.0)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소비자 인식을 통해 원산지표시법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은 위반품의 총 판매 금액을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하며, 음식점과 같이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위반원료 비율의 환산 금액을 부과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제조업자, 판매자,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시 원산지표시 위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 부과기준은 총 판매액에 위반한 농·수산물 배합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총 판매액을 부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둘째, 현행법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임대업 및 판매 중개업에는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의 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이 부과되고 있으나, 분석 결과 이들 업체에도 원산지표시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산지표시법에는 포장재·꽃말·홍보물 등에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 중에는 상품명에 지역명을 활용한 상품이 존재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있다.

넷째, 현재 수입 축산물과 수산물은 국내에서 일정 기간 비육 및 양식하였을 경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농·임산물의 경우 국내 토양에서 성장시킨 경우 원산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농·임·축·수산물의 이동·이식으로 인한 원산지 변경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분석 결과, 소비자는 순이나 꽃을 생산하거나 작물을 장기 재배하더라도 원산지가 변경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원산지표시 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유통 및 판매 주체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아직 제도 내에 포함되지 않는 유통 주체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여지가 있는 상품명에 대한 표시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농·임·축·수산물의 이동·이식으로 인한 원산지 변경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원산지표시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였고, 향후 원산지표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향후 원산지표시제도 개정 시 소비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Submitted, February. 5, 2020; Revised, March. 6, 2020; Accepted, April. 19, 2020]

## References

1. Choi, I. S. 2011. A Study on Effective Control Plans for Breach of Country of 1 Labeling.

- Korea Tax Research Forum. 11(2): 258-294.
2. Hwang, H. J. 2018. A Study on Rational Harmonization of Penalties for Indication of Origin.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21(1): 43-60.
  3. Kim, M. G. 2011.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Korea Origin Certification System. *Management & Economic Research Institute*. 34(1): 181-208.
  4. Park, J. M. 2015. The Survey on Origin Indication Statue of Agriculture and Fishery Products at Food Cafè.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49(5): 343-353.
  5. Yun, J. U. and C. S. Lee. 2015. A Case Study of FTA Utilization on the Violation of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7(2): 201-223.
  6. Yu, K. H. and S. C. Bang. 2015. A Study on Improving effectiveness of Rules of Origin: Focus on Origin Country Labelling and Determining System.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16(3): 103-123.